

프랑스 원자력하청업체에 대한 불허용과책의 인정과 그 의의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황재훈 (프랑스 파리 13대학 사법 박사과정)

■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 베로노 씨의 죽음

2012년 9월 19일,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크리스티안 베로노(Christian Verroneau) 씨는 5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에손느(Essonne) 사회보장법원은 2016년 4월 14일, 약 30년간 베로노 씨를 고용했던 엔델(Endel) 사에 그의 사망에 대한 불허용과책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언론은 1심에 불과한 해당 판결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원자력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상 불허용과책을 인정한 판결이다. 기존에는 주로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하도급업체에 불허용과책이 인정되어 왔다. 해당 판례의 의의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산업재해에 관한 프랑스 실정법상 불허용과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해당 판례 및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 불허용과책

불허용과책(faute inexcusable)은 20세기 후반에 교통사고, 운송(상법전 제133조의 8 참조), 산업재해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등장한 용어이다. 불허용과책은 행위자에 의해 충분히 심사숙고되었고, 예외적으로 중대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손해에 대해 의도가 있거나 적어

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¹⁾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산업재해에 관해 사용자 측의 불허용과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을 초래함을 인식하고도,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책»으로 정의한 바 있다.²⁾ 즉 위험에 대한 인식과 예외적인 중대성이 요건인 셈이다. 하지만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관하여 2002. 6. 28. 파기원 사회부 판결은 두 번째 요건인 예외적인 중대성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해당 판결 이후 산업재해에 관해서만큼은 위험에 대한 인식만 실질요건이다.

물론 이 요건 역시 해석에 여지를 두고 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을 실제 인식으로 파악하여 까다롭게 본다면 이는 의도적과책(faute intentionnelle, 손해발생에 대해 완전히 인식한 고의)에 가까워질 것이고, 추상적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가졌어야 할 인식으로 본다면 이는 중대한 과책에 가깝게 해석하는 것이다.³⁾

이 경우 제3자의 과책은 사용자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⁴⁾ 근로자의 과책 정도가 불허용과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⁵⁾

그렇다면 불허용과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개념은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반과책(faute simple)을 넘어서 불허용과책을 저지

1)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5e éd., LGDJ, 2016. n°413, p.319.

2) Ass. plén., 18 juillet 1980.

3) Geneviève Viney, «Évolution de la signification et du rôle de la faute en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in Yves Lequette et Nicolas Molfessis (dir.), Quelle avenir pour la responsabilité civile ?, Dalloz, 2015. pp.29~30 참조. 국내의 학설 중 불허용과책을 「용인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로 번역하는 경우(김성원(2011), 프랑스에서의 석면피해와 국가배상책임, 『원광법학』 27(2), p.42)가 있는데, 이 경우 불허용과책은 우리나라 법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프랑스법상 중대한 과책에 가깝다는 학설을 따라 해석한 것이다. 다만 최근의 교과서 중에서는 불허용과책을 우리법상 고의로 분류하는 경우(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5e éd., LGDJ, 2016. n°413, p.319)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과실로 번역할 수는 없다. 아래에서 살펴볼 판례 역시 사업자의 위험인식을 현실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파기원 역시 고의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다.

4) Civ. 2e, 2 nov., 2004.

5) Ass. plén., 24 juin 2005. 아래에서 살펴볼 두 번째 사례 역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폐암발생에서, 노동자의 흡연사실은 고려요소에서 배제되었다.

른 경우 노동자가 취득하는 추가적 권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법전(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4권 제5편 제2장 «사용자의 불허용과책과 의도적과책»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법전 제452조의 1은 ‘사고가 사용자 혹은 그를 대신하여 지휘·감독하는 자의 불허용과책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 혹은 그 권리의 승계인은 이하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보장법전 제452조의 5는 산업재해가 사용자 등의 의도적 과책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혹은 그 권리의 승계인은 사회보장법전상의 지급금 이외에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 원자력 산업상 고용주에 대한 불허용과책의 인정 사례

우선 베로노 씨가 엔텔 사에 산업재해에 관한 불허용과책을 인정받은 판례를 살펴본 후, 프랑스전력공사 직원 사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니제르의 우라늄 광부사건을 살펴본다. 세 노동자 모두 원자력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다가 폐암으로 50대에 조기사망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사례 1: 원자력 하청업체 직원의 폐암

크리스티안 베로노 씨는 26살의 나이에 1981년 8월 19일에 에너지대기업의 자회사인 엔텔 사 원자력발전분야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0년 넘게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처리 및 방사선편기물 분류작업을 해왔다. 2009년 7월 6일 그는 폐암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2010년 1월 15일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사측과 추가보상에 대한 협상은 실패했다. 그리하여 베로노 씨는 2010년 10월 11일에 사측을 상대로 불허용과책에 기한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안타깝게도 2012년 9월 19일 그는 폐암이 진행되어 57세라는 나이에 사망하였고 소송은 일단 중단되었다. 3년 뒤인 2015년 7월 1일에 와서야 그의 아내와 딸이 소송을 수계한다.

이후 2016년 4월 14일에 법원은 사용자 측이 산업재해 발생에 있어서 불허용과책을 저질렀음을 인정하였다. 해당 재판부는 엔텔 사가 직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격하거나 추가적으로 강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주목했다. 변론 중에 작업환경에서 여러 위험물질의 분진이 심각했다는 주장이 있었다. 물론 사측의 변호인 티에리 달마소(Thierry Dalmasso)는 엔텔 사가 노동자의 죽음에 무관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엔텔 사 역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지만 관련규정이 정하는 연간 20밀리시버트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항변하였다. 이외에도 엔텔 사는 관련 규정들을 잘 준수하였고, 노동자들의 방사선 피폭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원자력안전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왔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재판부가 사측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함으로써 베로노 씨의 아내와 딸은 10만 4천 유로에 달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2: 흡연가인 프랑스전력공사 용접공의 폐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담피에흐언부블리(Dampierre-en-Burly) 원자력 발전소에서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장 프랑수아 클로(Jean-François Cloix) 씨는 2009년 4월 25일,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사망한다. 이 사건에 대해 2013년 8월 27일 오를레앙(Orléans) 사회부 법원은 마침내 프랑스전력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관하여 불허용과책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장 프랑수아 클로 씨가 애연가였다는 점이었다. 당연히 사측에서는 이 점을 들어 폐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사측은 클로 씨가 30년간 54.5밀리시버트, 그러니까 법정 방사선 피폭한도의 3%만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는 6년에 한번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 것과 유사함). 이에 유족 측 변호사였던 엠마누엘 진트락(Emmanuelle Gintrac)은 담배가 폐암의 주요 발암요인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폐암의 원인 중 발전소 내의 방사선이 한몫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다. 즉 발전소 내의 방사선이 폐암의 위험을

더욱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트락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사용자 측의 불허용과책이 성립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과책이 결과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외부적 요소 혹은 노동자의 과책이 손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불허용과책에 대한 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재판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자 측에 불리한 태도를 명확히 취했다. 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가 폐암의 발생이 발전소 내의 방사선과 관련없음을 증명하는데 실패했음을 근거로, 방사선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한편 재판부가 사측의 불허용과책을 인정함으로써 클로 씨의 아내와 두 자녀는 9만 5천 유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례 3 : 니제르(Niger) 우라늄 광부의 폐암

1978년부터 1985년까지 아레바(Areva, 프랑스 회사) 사의 자회사인 코미낙(Cominak, 니제르 회사)에서 일했던 59세의 세르지 베넬(Serge Venel) 씨는 59세의 나이로 2009년 7월 사망했다. 그의 죽음의 원인 역시 폐암이었다. 그가 죽기 몇 달 전, 베넬 씨의 담당의사는 그의 폐암이 광산에서의 우라늄 흡입 때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에 베넬의 유가족은 아레바 사에 베넬 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적으로 아레바 사는 베넬 씨의 고용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난점이 있었다. 하지만 틀링(Melun) 사회보장법원은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지시가 있음을 인정하고, 아레바 사에 공동고용주 지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아레바에 불허용과책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유가족은 우선 20만 유로를 받게 되었다.

베로노 씨 판결의 의의

2014년 르몽드의 기사에 따르면, 프랑스전력공사의 원자력 발전소에는 2만 2천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프랑스전력공사 원전 유지 및 보수에 관해 4분의 3이 하청업체

에 의해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들이 없으면, 프랑스의 원전은 발전을 멈춘다. 프랑스전력 공사는 그들을 하청노동자(sous-traitants)가 아니라 협력자(collaborateurs) 혹은 파트너(partenaires)라고 부른다.

원자력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는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니다.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소 하청 노동자 역시 더 높은 방사선 피폭과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프랑스전력공사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4년 프랑스전력공사 직원의 사고 발생률은 40% 가까이 줄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하청 노동자의 사고 발생률은 증가했다. 실제로 많은 하청노동자의 사고가 숨겨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프랑스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발빠르게 외부화하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하청노동자는 사고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 마을 밖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저녁에는 북부 프랑스에서 아침에는 남부 프랑스의 발전소를 수리하게 되는 프랑스 투어가 시작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2차 증기터빈의 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한 하청업체 직원 엘리자베스 포찌(Elisabeth Pozzi) 씨는 2년의 근무 동안 250밀리시버트의 피폭을 감내해야 했다. 물론 하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의도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법원도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매년 16명 내지 20명의 노동자가 방사선 피폭과 관련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재해 인정률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노동자들이 늙어가고 누적 피폭량이 증가할수록 암 발병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해당 판례는 하청업체를 이용해 원자력발전의 위험을 외부화하고자 하는 프랑스전력공사(EDF)에 경고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방사선 피폭은 대부분 전력회사 직원이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이 감내하는 것이 실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외부화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베로노 씨 판결이 없었다면, 프랑스 원자력 산업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의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을 것이다.

■ 프랑스의 원전감축정책

원자력은 여전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형산업이자 주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2015년 올랑드 정부는 2025년까지 원자력이 차지하는 에너지 생산 비중을 76%에서 5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금융가 출신인 마크롱이 이끄는 프랑스의 새 정부는 어떠할까? 새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지지할까? 언뜻 그는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마크롱은 올랑드 정부의 원전축소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금융가 출신인 마크롱이 원자력 발전을 줄이겠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그의 생각과 의지는 2017년 5월에 임명한 환경부 장관의 발언 내역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마크롱 정부의 환경부 장관(ministre d'État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니콜라스 울로(Nicolas Hulot)는 2016년 3월 30일 라디오방송인 유럽1(Europe 1)과의 인터뷰에서 «원자력 발전은 구시대의 잔재»라는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가 임명된다는 소식이 밝혀지자, 프랑스전력공사의 주식은 하루만에 6.57% 폭락을 기록한다. 2017년 7월 10일, 니콜라스 울로는 2015년의 올랑드 정부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17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KCLU**

참고문헌

- Alain Bénabent, Droit des obligations, 15e éd., LGDJ, 2016.
- Geneviève Viney, «Évolution de la signification et du rôle de la faute en droit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 in Yves Lequette et Nicolas Molfessis (dir.), Quelle avenir pour la responsabilité civile ? , Dalloz, 2015.

참조기사

1. 크리스티안 베로노(Christian Verroneau) 판결 관련

- 르 파리지앵(Le parisien), Victime du nucléaire : le tribunal d'Evry reconnaît la « faute inexcusable » de l'employeur, <http://www.leparisien.fr/courcouronnes-91080/mort-d-un-sous-traitant-du-nucleaire-le-tribunal-d-evry-reconnait-une-faute-inexcusable-de-son-employeur-26-04-2016-5747103.php>

2. 크리스티안 베로노(Christian Verroneau) 판결 관련

- 20미뉴트(20 minutes), Une filiale d'Engie condamnée après le cancer mortel d'un agent travaillant sur des sites nucléaires, <http://www.20minutes.fr/societe/1836007-20160428-filiale-engie-condamnee-apres-cancer-mortel-agent-travaillant-sites-nucleaires>

3. 장 프랑수아 클로(Jean-François Cloix) 판결 관련

- 르몽드(le monde), EDF condamné pour "faute inexcusable" après le décès d'un salarié, http://www.lemonde.fr/economie/article/2013/09/09/edf-condamne-pour-faute-inexcusable-apres-le-deces-d-un-salarie_3473259_3234.html#b6jw1RoBR85ghDSc.99
- 라트리뷴(la tribune), Nucléaire : EDF condamné pour "faute inexcusable" pour le cancer mortel d'un employé, <http://www.latribune.fr/entreprises-finance/20130908trib000783738/nucleaire-edf-condamne-pour-faute-inexcusable-pour-le-cancer-mortel-d-un-employe.html>

4. 세르지 베넬(Serge Venel) 판결 관련

- 에흐피(rfi), Niger : Areva condamné après le décès par cancer d'un ex-salarié d'une mine d'uranium, <http://www.rfi.fr/afrique/20120513-niger-areva-condamne>

- 르 파리지엔(Le parisien), Niger : Areva condamné pour maladie professionnelle liée à l'uranium, <http://www.leparisien.fr/seine-et-marne-77/areva-condamne-pour-maladie-professionnelle-liee-a-l-uranium-au-niger-11-05-2012-1995221.php>

5. 원자력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그들이 받는 차별적 대우 관련

- 르몽드(le monde), Nucléaire : voyage au pays des forçats de l'atome, http://www.lemonde.fr/a-la-une/article/2014/04/09/nucleaire-voyage-au-pays-de-la-dose_4398075_3208.html#7HIjzku90Lhy7JYU.99

6. 마크롱 정부의 원자력 발전 정책 관련

- 르몽드(le monde), Loi travail, cumul des mandats, CICE... que va faire Macron des réformes du quinquennat?,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5/10/loi-travail-cumul-des-mandats-cice-que-va-faire-macron-des-reformes-du-quinquennat_5125208_4355770.html?xtmc=nucleaire_fessenheim&xtcr=8

7. 마크롱 정부의 환경부 장관(ministre d'État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니콜라스 울로(Nicolas Hulot)의 원자력 정책 관련

- 웨스트프랑스(Ouest France), Nicolas Hulot et Emmanuel Macron vont-ils s'entendre sur le nucléaire?, <http://www.ouest-france.fr/politique/edouard-philippe/nicolas-hulot-et-emmanuel-macron-vont-ils-s-entendre-sur-le-nucleaire-5000384>
- 르몽드(le monde), Combien de réacteurs nucléaires fermer pour réduire à 50% la part de l'atome?, http://www.lemonde.fr/energies/article/2017/07/10/combien-de-reacteurs-nucleaires-fermer-pour-reduire-a-50-la-part-de-l-atome-dans-le-mix-electrique-francais_5158549_1653054.html